

대한변호사협회

☎06234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 ☎ 02-2087-7872 | FAX: 02-3476-2771
담당팀: 평가팀, 팀장: 정영숙 담당: 신우수 과장, E-mail: mer1476@koreanbar.or.kr 홈페이지: koreanbar.or.kr

문서번호 평가 제1684호

시행일자 2018. 8. 7.

받 음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참 조



제 목 손해사정사 등의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손해사정사(또는 보험브로커) 등이 질병·사고 등 보험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접근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나 협상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권 및 휴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의하여 손해사정사에게 금지된 행위이며,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한편 2018. 8. 22. 시행 예정인 개정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대한변협은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에 맞추어 손해사정사(또는 보험
브로커) 및 이들의 행위를 방조하는 병원 관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오니 귀 협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
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및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2.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시행일 : 2018.8.22.] 제189조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중략)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